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96
----------	-------

발의연월일 : 2026. 6. 22.

발 의 자 : 김문수 · 권향엽 · 김준혁
조계원 · 양부남 · 정진욱
이주희 · 황명선 · 이광희
이수진 · 임미애 · 김남근
김현정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학생위원은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며, 전문가 위원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을 보면 교직원 위원의 수가 학생 위원의 수를 능가하는 경우가 많고, 교직원과 학생 위원의 수가 동수로 구성되더라도 전문가 위원의 선임 및 의견에 따라 등록금이 책정되게 되어,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 측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은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각각 같은 수

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 결정 과정에서 학교구성원의 의견이
끌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전문가 등으로”를 “전문가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 구성단 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를 “학생 위원과 교직원 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하고”로,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을 “위원은”으로, “협의하여야 한다”를 “각각 추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선임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② (생 략)</p> <p>③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u>전문가 등으로</u>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u>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u>이 되도록 <u>하고</u>, 관련 <u>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야 한다.</u></p> <p>④ ~ ⑫ (생 략)</p>	<p>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전문가로</u>----- ----- -----<u>학생 위원과 교직원 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u> <u>하고</u>-----<u>위원은</u>----- ----- ----- -----<u>각각 추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선임한다.</u></p> <p>④ ~ ⑫ (현행과 같음)</p>